

의안번호	2219844
의 퇴 인	김승원의원
회 답 일	2026.7.16
추계번호	26D342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파견공무원 증원 및 수사기간 연장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7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파견공무원 증원(안 제6조) 수사기간 연장(안 제10조)	인건비	809
	운영비	1,377
	시설비	66
	사무실 임차료	457
	합계	2,709

주: 본 추계는 수사기간 중 인력 규모는 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운영, 수사기간 1개월 증가, 신설되는 공소 검사는 특별수사관 중 임명되고 특별수사관에 준해 보수 및 대우를 받는 것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개정안으로 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은 수사기간 잔여일 약 1개월을 전제로 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운영방식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5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법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증원	재량규정
2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수사기간의 30일 연장 가능횟수를 1회 추가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5항(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	○	—
2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경비를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사무실 임차료로 구분하고 파견공무원 인원 증원 요인과 수사기간 연장 요인으로 구분하여 추계
- 기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건희 특검법」이라 함)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경비¹⁾를 참고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²⁾ 및 소비자물가상승률³⁾을 각각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정

1) 김건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 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수사기간(준비기간 포함 200일) (2025.6.12. ~ 2025.12.28.)
직무활동 운영비 ¹⁾	5,891
시설비 ²⁾	595

주: 1.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평균 185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39명, 기타직 21명, 파견인력 119명)이었음

2.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경비를 합산하여 산출

3. 시설비는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네트워크 공사, CCTV 설치공사 등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6.3.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200일(2025.6.12.~ 2025.12.28.)이고, 운영비와 시설비 모두 이 기간에 지출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 파견공무원 인원이 20명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 시설비 및 사무실 임차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⁴⁾하고,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파견공무원 증가에 따른 특별검사 운영비, 시설비 및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파견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사기간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소유지기간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의한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로 2026년 2월부터 8월⁵⁾까지로,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1개월간 추가인원이 파견된다고 가정
 - 현행법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⁶⁾, 수사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기간에는 증원된 20명의 파견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
-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에 의한 최장 수사기간이 170일에서 200일로 연장됨에 따라, 수사기간이 2026년 7월에서 8월까지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정원 최대인원인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50명을 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검사는 현재 특별수사관(3급) 중에서 10명 임명되는 것으로,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을 공소검사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13조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4)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5) 2026.2.5. 특별검사 임명, 개정안에 의한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을 전제할 때 2026.8.23까지임

6) **현행법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⑤ 생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공소유지기간 특검에서 활동하였을 특별수사관 인력이 공소검사로 선발되어 개정안에 따른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따라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는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의 기준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표 2] 3대 특검 직급별 기준 보수액(2025년 기준)

직급	월 평균 보수(원)
특별검사	12,122,000
특별검사보	10,925,000
특별수사관(3급)	7,126,000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2025년 기준 보수액에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간 1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을 다음의 표와 같이 추계

[표 3] 수사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계

구분	2026			
	1인당 월 보수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특별검사	12.5	1	1	13
특별검사보	11.3	5	1	57
특별수사관(3급)	7.4	100	1	740
합계	-	116	-	809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 8억 900만원으로 추계

나. 운영비

- 운영비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운영비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 파견공무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추가재정소요는 총 9,800만원, 수사기간 연정에 따른 운영비 추가재정소요는 12억 7,900만원으로, 운영비는 총 13억 7,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6.7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인당 단가⁷⁾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파견공무원 증원 수를 적용

[표 2] 개정안에 따른 운영비 추가재정소요

구분		2026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운영비	파견공무원 증원	4.9	20	1	98
	수사기간 연장	4.9	261	1	1,279
	소계	4.9	281	1	1,377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다. 시설비

- 시설비는 김건희 특검의 시설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파견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설비 추가재정소요는 총 6,6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⁸⁾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파견공무원 증원 수를 적용

7) 수사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58억 9,100만원)를 개월 수(6.7개월)와 활동인원(평균 185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8) 수사기간의 시설비(5억 9,528만원)를 활동인원(평균 185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표 5] 파견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설비 추가재정소요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재정소요 (C=A×B, 백만원)
시설비	3.3	20	66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사무실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는 김건희 특검의 1인당 면적에 파견공무원 증원인원 수와 서울 도심지역 임대료 단가(2025년 3분기 월 31,000원/㎡)⁹⁾를 각각 반영하여 추계하고, 관리비는 임대료의 50%(2025년 3분기 월 15,500원/㎡)로 가정함

□ 추가재정소요는 총 4억 5,7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35㎡)¹⁰⁾에 수사기간 파견공무원 증원 수(20명)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기존인력(261명)을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각각 700㎡, 9,135㎡)을 산출한 후,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

[표 6] 개정안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년

구분		2026			
		임차면적 (A, ㎡)	단가 (B, 천원)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사무실 임차료	파견공무원 증원	700	46.5	1	33
	수사기간 연장	9,135	46.5	1	425
합계		9,835	46.5	1	457

주 1. 단가는 임대료(월 31,000원)와 관리비(월 15,500원)를 합산한 것임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9)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25.10.30. 등록)

10) 수사기간의 사무실 임대면적(6,480㎡)를 활동인원(평균 185명)으로 나누어 산출함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파견공무원 증원 및 수사기간 연장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총 27억 900만원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파견공무원 증원(안 제6조) 수사기간 연장(안 제10조)	인건비	809
	운영비	1,377
	시설비	66
	사무실 임차료	457
	합계	2,709

주: 본 추계는 수사기간 중 인력 규모는 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운영, 수사기간 1개월 증가, 신설되는 공소검사는 특별수사관 중 임명되고 특별수사관에 준해 보수 및 대우를 받는 것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개정안으로 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은 수사기간 잔여기간 약 1개월을 전제로 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운영방식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수사기간 중 인력 규모는 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운영, 수사기간 1개월 증가, 신설되는 공소검사는 특별수사관 중 임명되고 특별수사관에 준해 보수 및 대우를 받는 것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개정안으로 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은 수사기간 잔여기간 약 1개월을 전제로 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운영방식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광근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광근	02-6788-4831	kklee@assembly.go.kr